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 운영정원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기존 개방형직위로 운영중인 에너지안전과를 직위 해제하고 미래자동차과를 개방형직위로 신설하여 2023년 10월 30일까지 한시 운영하며 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정책실 및 국가기술표준원에 두는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산업정책실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화 협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가등급으로 하고,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을 “가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및 비상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비상안전기획관은 직제 제10조제3항제21호, 제21호의2 및 제22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제8조제1항 중 “가등급으로 하고, 산업정책관·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

및 제조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을 “가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업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산업정책관·소재융합산업정책관 및 제조산업정책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산업정책관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소재융합산업정책관은 직제 제12조제3항제48호부터 제54호까지, 제57호부터 제61호까지 및 제76호부터 제8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제조산업정책관은 직제 제12조제3항제62호부터 제75호까지, 제86호부터 제89호까지의 사항과 직제 제51조의6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8조제14항(중전의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계로봇장비과장”을 “기계로봇항공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8호를 제3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8호부터 제3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7호(중전의 제28호) 중 “일반기계·장비·로봇”을 “일반기계·장비·로봇·항공”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중전의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항공과장”을 “자동차산업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0호 중 “자동차·항공산업”을 “자동차산업”으로 한다.

28. 항공우주산업 개발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29.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운영

30. 항공기 및 인공위성 개발사업의 지원 및 부품산업의 지원·육성

31.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출 확대를 위한 품질인증협정의 체결 추진,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32. 항공기 및 부분품의 수입승인 및 항공우주 분야 기술도입과 관련된 사항

33. 방위산업체의 지정 등 방위산업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34.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35.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6. 민·군 기술협력의 활성화 지원

제9조제1항 중 “가등급으로 하고, 산업기술융합정책관·지역경제정책관 및 중견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을 “가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산업혁신성장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지역경제정책관 및 중견기업정책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지역경제정책관은 직제 제13조제3항제29호부터 제4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중견기업정책관은 직제 제13조제3항제46호부터 제5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9조제12항(중전의 제8항)제8호 중 “지역의 투자활성화”를 “지역경제활성화”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 및 제15호를 각각 제15호 및 제1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지방투자기업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16. 지방이전 기업 조세감면 처리에 관한 사항

14.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업 투자수행 및 사업이행 관리

19.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및 운영

제9조제13항(중전의 제9항)제1호 중 “관리”를 “관리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제16호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7호,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제19호, 제21호 및 제2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7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산업단지 대개조 정책의 수립·시행

11. 스마트 산업단지 정책의 수립·시행

17. 농공단지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 규정의 관리

20. 공장설립지원센터·공장설립움부즈만사무소 및 산업입지연구센터의 관리·감독 및 지원

제10조제1항 중 “가등급으로 하고, 에너지혁신정책관·자원산업정책관 및 원전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을 “가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2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자원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에너지혁신정책관·자원산업정책관 및 원전산업정책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48호까지의 사

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자원산업정책관은 직제 제14조제3항제49호부터 제8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원전산업정책관은 직제 제14조제4항제82호부터 제9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3조제1항 중 “가등급으로 하고, 자유무역협정정책관 및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을 “가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직제 제17조제1항에 따라 통상교섭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자유무역협정정책관 및 자유무역협정교섭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직제 제17조제3항제6호,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 제12호, 제14호, 제22호, 제24호 및 제25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직제 제17조제3항제15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4조제1항 중 “가등급으로 하고, 무역정책관·투자정책관 및 무역안

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무역정책관·투자정책관 및 무역안보정책관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을 “가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을 제1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을 제1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 제14항 및 제16항을 각각 제14항, 제16항 및 제18항으로 한다.

② 직제 제18조제1항에 따라 무역투자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무역정책관·투자정책관 및 무역안보정책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무역정책관은 직제 제18조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투자정책관은 직제 제18조제3항제20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무역안보정책관은 직제 제18조제3항제57호부터 제8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8조제3항제9호, 제10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9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2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제9호 중 “품목·서비스·가공기술”을 “품목·서비스”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산업표준에 관한 법령·제도의 운영·연구·개선

16. 산업표준화 정책의 수립·추진

17. 한국산업표준의 이용·보급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산업표준의 제정·개정·확인 및 폐지 관련 표준화 정책의 수립·시행

19. 산업표준화 실태조사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제21조의2제3항제2호 중 “무역기술장벽에 따른”을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무역기술장벽”을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대응”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기술장벽”을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대응”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기술장벽”을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대응 관련 모범규제관행 발굴·전파 및 정착

제21조의2제4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기술장벽 관련 양자 및 다자 협의에 관한 사항

제21조의2제4항제6호 중 “자유무역협정”을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

협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관련 교류·협력 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각각 “교류·협력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 분야 기술규제”를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9. 적합성평가 존속 필요성의 검토 및 이를 위한 관련 정부부처·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대응

제35조제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7퍼센트”로 한다.

제36조제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7퍼센트”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3 제2호, 별표 3의2 제2호, 별표 4 제1호나목·제2호나목 및 별표 4의2 제1호나목·제2호나목과 같다”를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에 따른 정원 배정 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

제38조제2항 중 “에너지안전과장”을 “미래자동차과장”으로 한다.

제4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6(미래자동차과) ① 미래자동차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

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미래자동차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3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를 “계”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891”을 “898”로 하며, 일반직 계 “879”를 “886”으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24”를 “25”로 하며, 행정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4”를 “9”로 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7.0”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7.0”를 삭제하고, “행정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1.0”를 삭제하며, 전산서기 “1.0”을 “1”로 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5.0”를 삭제한다.

별표 3의2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를 “계”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891”을 “898”로 하며, 일반직 계 “879”를 “886”으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24”를 “25”로 하며, 행정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4”를 “9”로 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7.0”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7.0”를 삭제하고, “행정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1.0”를 삭제하며, 전산서기 “1.0”을 “1”로 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5.0”를 삭제한다.

별표 4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23”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223”을 “224”로 하며, 행정서기보·사서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5”를 “6”으로 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단서 관련)

1. 국가기술표준원 공무원 정원표

총계	221
일반직 계	221
고위공무원단·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5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3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7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44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47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
행정서기·사서서기·공업서기 또는 전산서기	11
행정서기보·사서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6
운전서기보	3
방호서기보	1
기계운영서기보·전기운영서기보 또는 사무운영서기보	1
기계운영서기보·전기운영서기보·화공운영서기보	5

무원 계 1.0”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1.0”을 삭제하고, “행정서기보·사서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0”을 삭제하며,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5”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25”를 “26”으로 하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1.0”을 삭제하고,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0”을 “1”로 한다.

별표 4의2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화상담운영서기보 또는 사무운영서기보	
공업연구관 · 환경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48
공업연구사	28
2. 광업등록사무소 공무원 정원표	
총계	26
일반직 계	26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8
공업주사	4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
공업주사보	1
행정서기 · 공업서기 또는 전산서기	1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
운전서기보	1
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1.0
일반직 계	1.0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0
3. 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공무원 정원표	
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총계	18
일반직 계	18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3
공업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또는 전산주사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
행정서기 또는 시설서기	2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4

운전서기보	1
방호서기보	1
나.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총계	17
일반직 계	17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3
공업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또는 전산주사	2
방호주사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
방호서기보	1
운전서기보	1
전문경력관 가군(비상안전계획 담당)	1
다.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	
총계	11
일반직 계	1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또는 전산주사	2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
사보	3
행정서기보	1
방호서기보 또는 사무운영서기보	1
전기운영서기보 또는 건축운영서기보	1
라.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총계	8

일반직 계	8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전산주사	3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
전기운영서기보·건축운영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2
마. 울춘자유무역지역관리원	
총계	7
일반직 계	7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전산주사	3
행정서기	1
전기운영서기보 또는 건축운영서기보	2
바.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총계	8
일반직 계	8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전산주사	2
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방호서기	1
사.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총계	8
일반직 계	8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전산주사	3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사무운영서기보	1
4. 광산안전사무소 공무원 정원표	
총계	36
일반직 계	36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전산주사	6
공업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5
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
행정서기·공업서기 또는 전산서기	4
운전서기보	4
사무운영서기보	4
5. 전기위원회사무국 공무원 정원표	
총계	8
일반직 계	8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6.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공무원 정원표	

총계	17
일반직 계	17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2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8
행정주사	3
행정서기	1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산업통상자원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39조제4항, 제40조제7항, 제41조제9항, 제41조의2제2항, 제41조의3제2항, 제41조의4제2항 및 제41조의5제3항 관련)

1.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존속기한: 2022년 7월 10일)

총계	3
일반직 계	3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1
행정사무관	1
행정주사	1

2. 신재생에너지정책단(존속기한: 2022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고위공무원단	1

3. 신통상질서전략실(존속기한: 2022년 3월 31일)

총계	21
일반직 계	21
고위공무원단	3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2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항공사무관·부감사관·공업연구관·학예연구관·편사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해양수산	1

연구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보 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사회복지사 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 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 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항공사무관 · 방재안전사 사무관 · 부감사관 · 공업연구관 · 학예연구관 · 편사 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구관 · 해양수산연구 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 시설 연구관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	11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통계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 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기상주 사 · 사회복지주사 · 감사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 사 · 수의주사 · 해양수산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 술주사 · 식품위생주사 · 약무주사 · 간호주사 · 항 공주사 · 방재안전주사 · 공업연구사 · 학예연구사 · 편사연구사 · 농업연구사 · 임업연구사 · 해양수 산연구사 · 기상연구사 · 보건연구사 · 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4
4. 소재부품장비협력관(존속기한: 2020년 12월 2일)	
총계	1
일반직 계	1
고위공무원단	1
5.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존속기한: 2020년 12월 2일)	
총계	8
일반직 계	8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1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 계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 상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 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사 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항 공사무관 · 부감사관 · 공업연구관 · 학예연구관 · 편사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구관 · 해양수산 연구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보 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사회복지사 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 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 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항공사무관 · 방재안전사 사무관 · 부감사관 · 공업연구관 · 학예연구관 · 편사 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구관 · 해양수산연구 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 시설 연구관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	3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통계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 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기상주 사 · 사회복지주사 · 감사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 사 · 수의주사 · 해양수산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 술주사 · 식품위생주사 · 약무주사 · 간호주사 · 항 공주사 · 방재안전주사 · 공업연구사 · 학예연구사 · 편사연구사 · 농업연구사 · 임업연구사 · 해양수 산연구사 · 기상연구사 · 보건연구사 · 환경연구사	3

또는 시설연구사

6. 통상국내정책관(존속기한: 2021년 11월 19일)

총계	1
일반직 계	1
고위공무원단	1

7. 국내대책과(존속기한: 2021년 11월 19일)

총계	1
일반직 계	1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1

8. 미래자동차과(존속기한: 2023년 10월 30일)

총계	2
일반직 계	2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보 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사회복지사 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 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 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항공사무관 · 방재안전사 무관 · 부감사관 · 공업연구관 · 학예연구관 · 편사 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구관 · 해양수산연구 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 시설 연구관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u>가등급</u> 으로 하고,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u>나등급</u> 으로 한다.	제6조(기획조정실) ① ----- ----- ----- <u>가등급</u> ----- ----- ----- ----- ----- ----- ----- ----- ----- ----- -----
<신 설>	--. ②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및 비상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u>나등급</u> 으로 한다.
<신 설>	③ 정책기획관은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

	업의 지원 및 부품산업의 지원·육성
<신 설>	31.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출 확대를 위한 품질인증협정의 체결 추진,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신 설>	32. 항공기 및 부분품의 수입승인 및 항공우주 분야 기술도입과 관련된 사항
<신 설>	33. 방위산업체의 지정 등 방위산업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신 설>	34.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신 설>	35.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신 설>	36. 민·군 기술협력의 활성화 지원
28. 그 밖에 일반기계·장비·로봇 산업 관련 사항 및 제조산업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37. ----- 일반기계·장비·로봇·항공 ----- ----- -----
⑪ 자동차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⑮ 자동차산업정책과장-----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항공우주산업 개발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삭 제>
11.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운영	<삭 제>
12. 항공기 및 인공위성 개발사업의 지원 및 부품산업의 지원·육성	<삭 제>
13.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출 확대를 위한 품질인증협정의 체결 추진,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삭 제>
14. 항공기 및 부분품의 수입승인 및 항공우주 분야 기술도입과 관련된 사항	<삭 제>
15. 방위산업체의 지정 등 방위산업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삭 제>
16.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삭 제>
17.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삭 제>
18. 민·군 기술협력의 활성화 지원	<삭 제>

19. (생 략)	19. (현행과 같음)		
20. 그 밖에 <u>자동차·항공산업</u>	20. ----- <u>자동차산업</u> -----	<신 설>	보좌한다.
의 진흥에 관한 사항	-----		④ 지역경제정책관은 직제 제13
⑫ ~ ⑮ (생 략)	⑯ ~ ⑲ (현행 제12항부터 제1		조제3항제29호부터 제45호까지
	5항까지와 같음)		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
제9조(산업혁신성장실) ① 산업혁	제9조(산업혁신성장실) ① -----	<신 설>	한다.
신성장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		⑤ 중견기업정책관은 직제 제13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	-----		조제3항제46호부터 제58호까지
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u>가등</u>	----- <u>가등</u>	② ~ ⑦ (생 략)	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
<u>급으로 하고, 산업기술융합정책</u>	<u>급</u> -----		한다.
<u>관·지역경제정책관 및 중견기</u>	-----	⑧ 지역경제진흥과장은 다음 사	⑥ ~ ⑪ (현행 제2항부터 제7
<u>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u>	-----	항을 분장한다.	항까지와 같음)
<u>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u>	-----	1. ~ 7. (생 략)	⑫ -----
<u>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u>	-----	8. <u>지역의 투자활성화와 관련된</u>	-----.
<u>등급으로 한다.</u>	-----.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산	9. (생 략)	8. <u>지역경제활성화</u> -----
	업혁신성장실장 밑에 두는 보좌	10. 지방투자에 대한 종합지원	-----
	기관은 <u>산업기술융합정책관·</u>	대책의 수립·추진 및 관련	9. (현행과 같음)
	<u>지역경제정책관 및 중견기업정</u>	기관과의 업무협조	<삭 제>
	<u>책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u>	11. 기업의 지방이전 신·중설	
	<u>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u>	등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 및	<삭 제>
	<u>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u>	관리	
	<u>급으로 한다.</u>	<신 설>	12. 지방투자기업 재정지원에
	③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직제		관한 사항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28호	12. (생 략)	15. (현행 제12호와 같음)
	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신 설> 13. 지역 간 공동 기업유치에 대한 지원 및 조정 <신 설> 14. · 15. (생 략) <신 설> ⑨ 입지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정책 · 계획의 수립 · 시행 2. ~ 8. (생 략) 9. 산업단지 관리 및 지원 <신 설> <신 설> 10. (생 략) 11. (생 략) 12. (생 략) <신 설>	16. 지방이전 기업 조세감면 처리에 관한 사항 <삭 제> 14.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업 투자수행 및 사업이행 관리 17. · 18. (현행 제14호 및 제15호와 같음) 19.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및 운영 ⑬ ----- -----. 1. ----- 관리 및 지원----- ----- 2. ~ 8. (현행과 같음) <삭 제> 10. 산업단지 대개조 정책의 수립 · 시행 11. 스마트 산업단지 정책의 수립 · 시행 12. (현행 제10호와 같음) 14. (현행 제11호와 같음) 16. (현행 제12호와 같음) 17. 농공단지 관련 정책의 수립 · 시행과 관련 규정의 관리	13.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14. 농공단지 관련 정책의 수립 · 시행 15. 농공단지 관련 규정의 관리 16. · 17. (생 략) <신 설> 18. 공장설립지원센터 · 공장설립읍부즈만사무소 및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운영 · 지원 19. · 20. (생 략) ⑩ ~ ⑬ (생 략) 제10조(에너지자원실) ① 에너지자원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에너지혁신정책관 · 자원산업정책관 및 원전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삭 제> <삭 제> <삭 제> 18. · 19. (현행 제16호 및 제17호와 같음) 20. 공장설립지원센터 · 공장설립읍부즈만사무소 및 산업입지연구센터의 관리 · 감독 및 지원 <삭 제> 21. · 22. (현행 제19호 및 제20호와 같음) ⑭ ~ ⑰ (현행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와 같음) 제10조(에너지자원실) ① ----- ----- ----- ----- 가등급----- ----- ----- -----
--	--	---	---

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신 설>	----- ----- -----. ②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자원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에너지혁신정책관·자원산업정책관 및 원전산업정책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4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자원산업정책관은 직제 제14조제3항제49호부터 제8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원전산업정책관은 직제 제14조제4항제82호부터 제9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② (생 략) ③ 에너지혁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4. (생 략) ④ ~ ⑩ (생 략) 제13조(통상교섭실) ① 통상교섭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자유무역협정정책관 및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 설>	1. ~ 24. (현행과 같음) ⑧ ~ ⑳ (현행 제4항부터 제16항까지와 같음) 제13조(통상교섭실) ① ----- ----- ----- ----- 가등급----- ----- ----- ----- ----- ----- -----. ② 직제 제17조제1항에 따라 통상교섭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자유무역협정정책관 및 자유무역협정교섭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④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직제 제17조제3항제15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⑥ (현행 제2항 및 제4항과 같음) ③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직제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④ (생 략) <신 설>	

⑤·⑥ (생 략) ⑧ ~ ⑩ (생 략)	제17조제3항제6호,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 제12호, 제14호, 제22호, 제24호 및 제25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⑧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⑨ ~ ⑪ (현행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와 같음)
제14조(무역투자실) ① 무역투자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u>가등급</u>으로 하고, 무역정책관·투자정책관 및 무역안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무역정책관·투자정책관 및 무역안보정책관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14조(무역투자실) ① ----- ----- ----- <u>가등급</u>----- ----- ----- ----- ----- -----.
<u><신 설></u>	② 직제 제18조제1항에 따라 무역투자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무역정책관·투자정책관 및 무역안보정책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③ 무역정책관은 직제 제18조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투자정책관은 직제 제18조제3항제20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무역안보정책관은 직제 제18조제3항제57호부터 제8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② ~ ⑤ (생 략) ⑦ ~ ⑩ (생 략) ⑬ ~ ⑯ (생 략)	⑥ ~ ⑨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⑪ ~ ⑭ (현행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와 같음) ⑮ ~ ⑱ (현행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와 같음)
제18조(표준정책국) ①·② (생 략) ③ 표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 략) 9. 산업표준에 관한 법령·제도의 운영·연구·개선 10. 산업표준화 정책의 수립·	제18조(표준정책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8.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u>추진</u>	
11. · 12. (생 략)	11. · 12. (현행과 같음)
<u>13. 한국산업표준의 이용 · 보급</u>	<u><삭 제></u>
<u>활성화에 관한 사항</u>	
14. ~ 18. (생 략)	14. ~ 18. (현행과 같음)
19. 표준화 정책의 수립 · 시행	19. -----
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u>나. 산업표준의 제정 · 개정 ·</u>	<u><삭 제></u>
<u>확인 및 폐지</u>	
다. · 라. (생 략)	다. · 라. (현행과 같음)
<u>20. 산업표준화 실태조사 관련</u>	<u><삭 제></u>
<u>정책의 수립 · 시행</u>	
21. ~ 37. (생 략)	21. ~ 37.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산업표준혁신과장은 다음 사	⑤ -----
항을 분장한다.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	9. -----
품 · 서비스 인증에 대한 표시	-----
및 대상 <u>품목 · 서비스 · 가공</u>	----- <u>품목 · 서비스</u> -----
<u>기술의 지정 · 폐지</u> 관련 정책	-----
의 수립 · 시행	-----
10. ~ 14. (생 략)	10. ~ 14.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5. 산업표준에 관한 법령 · 제</u>
	<u>도의 운영 · 연구 · 개선</u>

<u><신 설></u>	<u>16. 산업표준화 정책의 수립 ·</u>
	<u>추진</u>
<u><신 설></u>	<u>17. 한국산업표준의 이용 · 보급</u>
	<u>활성화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18. 산업표준의 제정 · 개정 · 확</u>
	<u>인 및 폐지 관련 표준화 정책</u>
<u><신 설></u>	<u>의 수립 · 시행</u>
	<u>19. 산업표준화 실태조사 관련</u>
<u><신 설></u>	<u>정책의 수립 · 시행</u>
15. (생 략)	<u>20. (현행 제15호와 같음)</u>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기술규제대응국) ① ·	제21조의2(기술규제대응국) 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기술규제정책과장은 다음 사	③ -----
항을 분장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무역기술장벽에 따른 기업의	2. <u>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u>
애로사항 발굴 및 대응	<u>기술규제 관련</u> -----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5. 무역기술장벽 관련 전문인력	5. <u>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u>
양성 · 교육에 관한 정책 수립	<u>기술규제 대응</u> -----
· 추진	-----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u>10.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기술장</u>	<u><삭 제></u>
<u>벽 관련 양자 및 다자 협의에</u>	
<u>관한 사항</u>	

11. <u>세계무역기구의 무역기술장벽 관련 업체·유관기관 및 정부부처 간 협력</u>	11. <u>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대응</u> -----
12. <u>세계무역기구의 무역기술장벽 대응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u>	12. <u>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u> -----
<신 설>	13. <u>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대응 관련 모범규제 관행 발굴·전파 및 정착</u>
13. (생략)	14. (현행 제13호와 같음)
④ 무역기술장벽협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u>세계무역기구의 무역기술장벽 관련 양자 및 다자 협의에 관한 사항</u>
6. <u>자유무역협정의 무역기술장벽 관련 업체·유관기관 및 정부부처 간 협력</u>	6. <u>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u> -----
7. ~ 9. (생략)	7. ~ 9. (현행과 같음)
⑤ 기술규제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u>소관분야 기술규제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대응</u>	<삭 제>
7. (생략)	7. (현행과 같음)

8. <u>무역기술장벽 관련 모범규제 관행 발굴, 전파 및 정착</u>	<삭 제>
<신 설>	9. <u>적합성평가 존속 필요성의 검토 및 이를 위한 관련 정부부처·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대응</u>
⑥ 기술규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개발도상국 등 지원을 위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u>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u> 에 관한 사항	1. ----- <u>관련 교류·협력 사업</u> -----
2. 개발도상국 등 지원을 위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u>교육·훈련 프로그램</u> 관련 유관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	2. ----- <u>교류·협력 사업</u> -----
3. 개발도상국 등 지원을 위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u>교육·훈련 프로그램</u> 관련 콘텐츠 개발, 전문가 육성 등 국내 기반 구축	3. ----- <u>교류·협력 사업</u> -----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6. <u>무역기술장벽 및 소관 분야 기술규제</u> 정보화 전략 수립·총괄·조정	6. <u>국가기술표준원</u> -----
7. 8. (생략)	7. 8.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1.	공무원	계	891		898	+7
	.		.		.	
	.		.		.	
	일반직	계	879		886	+7
	.		.		.	
	.		.		.	
	행정서기	또는	24		25	+1
	방재안전서기					
	.		.		.	
	전산서기		1.0		1	+0
	.		.		.	
	행정서기보	또는	4		9	+5
	방재안전서기보					
	.		.		.	
	.		.		.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장	-----
및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협	-----
력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	-----
할 수 있다.	-----.
<신 설>	제41조의6(미래자동차과) ① 미래
	자동차과장은 서기관·기술서
	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
	다.
	② 미래자동차과에 두는 공무원
	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
	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1. 공무원 계	<u>891</u>	<u>898</u>	+7
•	•	•	
•	•	•	
일반직 계	<u>879</u>	<u>886</u>	+7
•	•	•	
•	•	•	
행정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u>24</u>	<u>25</u>	+1
•	•	•	
전산서기	<u>1.0</u>	<u>1</u>	+0
•	•	•	
행정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u>4</u>	<u>9</u>	+5
•	•	•	
•	•	•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일반직 계	<u>223</u>	<u>224</u>	+1
•	•	•	
•	•	•	
행정서기보 · 사서서기보 · 공업 서기보 · 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u>5</u>	<u>6</u>	+1
•	•	•	
•	•	•	
일반직 계	<u>25</u>	<u>26</u>	+1
•	•	•	
•	•	•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u>1.0</u>	<u>1</u>	+0
•	•	•	
•	•	•	